

[2019-1학기 평생교육실습 안내]

1. 평생교육실습 과목 수강신청을 위한 선수 과목

-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수강신청하려면, 아래 4과목을 **반드시** 이수하셔야만 합니다.

선수과목(필수 4과목): 평생교육론, 평생교육방법론, 평생교육경영론,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
: 3학년 이상인 재학생부터 <평생교육실습> 수강가능.

※실습을 위한 선수과목 4과목을 모두 이수한 상태여야만 실습과목 신청이 가능합니다.
 근거법령 -평생교육법 시행규칙 [별표 1] 평생교육 관련 과목(제5조제1항 관련)

예시) 선수과목 4과목을 모두 이수 후 이번학기에 평생교육실습 신청 (O)
 선수과목 3과목 이수 후 이번학기에 선수과목 1과목과 평생교육실습 신청 (X)

**※ 2018년 2학기까지 선수과목을 모두 이수한 상태여야만 하므로 남은 선수과목 일부와 실습과목을
 동시 이수할 수 없습니다.**

2. 평생교육실습 수업

- 평생교육실습은 현장실습 수행과 출석수업, 온라인 수업(15주차)으로 이루어집니다.
 OT는 반드시 1회 출석 필수, 평가회는 1회 출석을 권장하는 바이며 수업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| 실습 교과목 | 구분 | 일 정 | 일 시 | 담당교수 | 비 고 | |
|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평생 교육 실습 | OT | (1차) 2019. 01. 03 (목) | 18시~21시(3시간) | 심미자 | 재학생만 가능 | 1회 선택 참석 (필수) |
| | | (2차) 2019. 03. 05 (화) | 19시~22시(3시간) | | 전체 | |
| | 평가회 | (1차) 2019. 05. 11 (토) | 15시~18시(3시간) | | 선택참석 (권장사항, 평가반영) | |
| | | (2차) 2019. 05. 31 (금) | 19시~22시(3시간) | | | |

※ 학교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- 온라인 수업은 15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일반 교과목처럼 수업일수 4분의 1 이상 결시 시 출석미달이 적용되어 F학점 처리됩니다.
- 실습기간은 0T 이후 시작하여 최종 평가회 이전까지 완료하셔야 인정이 됩니다.
- 방학 중 실습을 하실 학생(재학생만 가능)은 1월 0T에 반드시 출석을 해야 선실습이 가능합니다. 또한, 2월에 반드시 실습교과목을 수강신청하셔야 성적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.
- 실습기관의 실습지도자 요건을 반드시 엄수해야 합니다.

*** 실습지도자 자격

- 평생교육사 1급 자격증 소지자
-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보유(**2년)하고 관련업무 2년 이상 종사한 자
-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(**3년)하고 관련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자

[평생교육현장실습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]

① 실습 전: 실습기관 섭외 및 선정

- * 실습시작 **최소 일주일전**에 학과사무실에 실습신청서, 서약서를 제출한다 (학생임의 실습불가)
- * 사전에 협의된 실습기관에 학교는 실습의뢰공문을 발송한다.
(첨부서류(별도 양식): 신청서, 서약서 등)
- * 실습 의뢰에 대한 실습기관의 승인이 이루어지고 실습오리엔테이션에 반드시 출석하여 지도를 받은 이후부터 실습을 개시할 수 있다.

- 방학 중 선실습 : ① 실습신청서 및 서약서 다운로드 : 학교홈페이지 또는 학과공지사항게시판
② 실습신청서 및 서약서 작성 후 FAX 전송 : 051-320-2854)
③ 팩스 전송 후 학과사무실 확인 : 051-320-2843

- 학기 중 실습 : ① 실습신청서 및 서약서 다운로드 : 평생교육실습 강의실 내 자료실
② 실습신청서 및 서약서 작성 후 강의실 내 [교수자료실]에 업로드

② 실습기관 선정 후

- * **실습일지**를 다운로드 받아서 실습일지를 작성한다.

③ 실습 시작

- * 실습생은 현장실습 의뢰에 대한 실습기관의 승인과 실습오리엔테이션에 출석을 한 이후부터 실습을 시작할 수 있다.
- * 실습기간 내 담당교수가 실습기관으로 실습방문지도가 이루어진다.

- * 실습신청서에 기재된 기간내에만 실습이 가능하므로 실습시작 후 변경사항(일정, 지도교사)은 반드시 전공사무실로 알리고 공문으로 제출한다.

④ 실습 중

- * 주어진 양식의 실습일지를 매일 작성한다.

현장실습 시간 계산: 최소 **4주 이상**(시작 ~ 종료 4주, 28일 이상)

최대 8주안에 실습종료를 권장함. (직장인 **주말실습** 최대 10주)

총 160시간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.

통상근로시간 (09-18 / 식사시간 제외)을 기준으로 1일 최대 8시간까지 인정
현장실습기관의 특성 및 실습생의 상황(직장인 등)을 고려하여 야간 및 주말 시간을 이용한 현장실습도 가능하다.

실습의 지속성을 위해 최소 실습시간은 4시간 이상을 권장하며, 일주일을 통으로 비우지 않는다.

⑤ 실습종료 : 자료 제출

- * **실습일지 제출** : 현장실습 종료 후 10일 이내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.

※ **지연제출시 평가에 반영되며 감점**

- 실습일지는 반드시 **스프링 제본**하여 제출한다.
(제본 편집순서 : 표지-일지-모의프로그램개발-사진 등 증빙자료)
- 일지는 워드작업 또는 수기작성 중 선택하여 작성합니다.
- 일지는 실습지도자의 확인 도장 및 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.
- 증빙사진은 본인이 실제로 실습하는 장면을 위주로 찍어야 하며, 단순히 실습기관을 소개하는 사진은 증빙사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. (실습기간 내 자유롭게 찍으며 **최소 3장** 이상 첨부)
- 일지 및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하며 도장 및 서명 또한 스캔본 불가.
- 일지내용을 수정하고자할 경우 빨간색 펜으로 두 줄 그은 뒤 본인의 도장을 찍은 뒤 수정.
(수정테이프 불가)
- 기관서류는 제본하지 않고 낱장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.
실습평가점수 등이 있으므로 기관 측에서 학교로 따로 제출해주시거나
실습생에게 주실 경우(학생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처리) 실습일지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
* **실습기관에서 제출할 서류**

- 실습지도기록서 원본 1부
- 실습생평가서 원본 1부

- 현장실습평가서 원본 1부 (시간제 학생일 경우 2부, 학교제출용1부, 학생보관용1부)
- 현장실습확인서 원본 1부

※ 실습일지 제출처 (등기우편발송)

: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57 부산디지털대학교 평생교육학과 (우편번호 : 47011)

서류봉투겉면에 *평생교육실습일지 재증* 표기

주소 정확하게 기재바랍니다.

⑥ 실습평가회 참석 및 성적확인

* 실습종료 후 실습평가회 참석함을 권장한다.

* 실습 최종 평가회 이후에는 실습을 할 수 없다.

(* 시간제 학생은 성적확인 후, 평생교육진흥원에 반드시 본인이 등록해야 합니다.)

□ 평생교육실습기관의 유형 및 예시(국가평생교육진흥원)

| 구분 | 기관유형 | | 예 시 |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평생교육법 | ①유형 | 국가평생교육진흥원 | 국가평생교육진흥원 | |
| | | 시·도평생교육진흥원 |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, 경상북도평생교육진흥원, 대구평생교육진흥원,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,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,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, 광주평생교육진흥원, 인천평생교육진흥원, 울산평생교육진흥원, 대전평생교육진흥원, 부산평생교육진흥원,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,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,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 | |
| | | 시·군·구평생학습관 | 평생학습관, 공공도서관, 문화원, 연수원·수련원, 박물관, 복지관 등 (교육청으로부터 시·군·구평생학습관으로 지정받은 기간에 한함) | |
| | ②유형 |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지정기관 |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설치·지정 기관 | |
| | |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선정기관 | 당해연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선정 기관 | |
| | ③유형 | 평생학습도시 | 시·군·구 평생학습센터 또는 평생교육 전담부서 등 | |
| 국가·지자체 평생학습 추진기구 | | 광역시도청/시·군구청/시도교육청/지역교육청 내 평생학습센터 또는 평생교육 업무담당 부서 등 | | |
| ④유형 | 평생교육 관련사업 수행 학교 | 대학평생교육활성화지원사업, 학교평생교육사업(지역과 함께하는 학교사업, 방과후학교 사업 등) 수행 | | |
| ⑤유형 | 평생교육시설 신고·인가 기관 | 유·초·중·대학부설/ 학교형태/ 사내대학형태/ 원격대학형태/ 사업장부설/ 시민사회단체 부설/ 언론기관부설/ 지식·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| | |
| 그 밖의 다른 법령 | ⑥유형 | 평생직업교육학원 |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상 평생직업교육학원 형태 등록 여부 확인 (학교교과교습학원 형태는 인정 불가) | |
| | ⑦유형 | 기관형 교육기관 | 주민자치기관 | 시·군·구민회관, 주민자치센터 등 |
| | | | 문화시설기관 | 도서관, 박물관, 미술관, 과학관, 지방문화원 등 |
| | | | 아동관련시설 | 아동직업훈련시설, 아동복지관, 지역아동(정보)센터 등 |
| | | | 여성관련시설 | 여성인력개발센터, 여성(복지, 문화)회관 등 |
| | 청소년관련시설 | 청소년지원센터, 청소년수련시설, 청소년문화의집 등 | | |

| 구분 | 기관유형 | | 예시 | |
|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* | | | 노인관련시설 | 노인교실, 노인복지(회)관 등 |
| | | | 장애인관련시설 | 장애유형별 생활시설, 장애인복지관 등 |
| | | | 다문화가족관련시설 |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|
| | | | 사회복지시설 | 종합사회복지관 등 |
| | ⑧유형 | 훈련·연수형 교육기관 | 직업훈련기관 | 공공직업훈련시설, 지정직업훈련기관 등 |
| | | | 연수기관 | 공무원연수기관, 일반연수기관 등 |
| | ⑨유형 | 시민사회 단체형 교육기관 | 비영리민간단체 | 전국문해·성인기초교육협의회, 한국평생교육학회 등 |
| | | | 비영리 사(재)단법인 | 한국평생교육사협회, 한국문해교육협회 등 |
| | | | 청소년단체 | 한국청소년연맹, 청소년단체협의회 등 |
| | | | 여성단체 | 여성회, 여성단체협의회 등 |
| | | | 노인단체 | 대한노인회, 전국노인평생교육, 단체연합회 등 |
| | | 시민단체 | NGO, YMCA, YWCA, 환경운동연합 등 | |
| | 기 타 | | | 그 밖의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및 단체 |

문의 : 051)320-2843